

제2996호
2023. 5. 3.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제 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3-43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3-31호 : 세운재정비축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6

제2023-32호 : 세운 3-4, 5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8

● 공 고

제2023-434호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9

● 기 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고시 제2023-1호 : 세운재정비축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3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21.1.1.)에 따라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식품위생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안 제4조)
-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안 제5조)
- 영업제한 및 행정조치(안 제6조, 제7조)
- 준 용(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위생과,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

: 02-3396-5652, 팩스 : 02-3396-8894, email : obedient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① 구청장은「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이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의 경우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 또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영업자는 난간 주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옥외영업장에는 음향장치나 반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3.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4. 간이 벽이나 천장 등을 설치하여 옥외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5. 옥외영업장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파라솔, 테이블, 어닝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하여야 한다.
6.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데우기) 등 조리가 불가하며, 옥내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영업장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에 설치된 파라솔 등接客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에는 모두 옥내영업장으로 이동하는 등 옥외영업장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5. 일반·휴게음식점 중 건물 내·외 영업장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제2019-185호(2019.6.7.) 및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13호(2015.12.28.)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24호(2018.3.16.), 제2019-74호(2019.6.17.)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15호(2018.10.26.)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19호(2023.3.2.)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1번지 일대 / 4,729.7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10월 26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
 - 가.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 창 하, 이 창 재	이 종 근

- 나. 측량,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조정
- 다.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
- 라. 토지소유권(사업시행 후) 변경 :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
- 6.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3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제2019-185호(2019.6.7.) 및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58,59(2015.7.30.)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25호(2018.3.16.) 및 제2023-14호(2023.2.8.)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116호(2018.10.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20호(2023.3.2.)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대 / 6,987.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년 10월 26일
5.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의 요지
 - 가. 사업시행자 대표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이 창 하, 이 창 재	이 종 근

- 나. 측량, 토지분할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정비기반시설 면적 조정
- 다.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 환지 변경 : 총회의결에 따른 환지 변경
- 라. 토지소유권(사업시행 후) 변경 : 수용 및 국공유지 확정측량 면적 반영 등
- 6.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 비치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434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3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3. 8. 31.	2023.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산불 피해 납세자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세무2과(☎02-3396-5230,5220,5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고시 제2023-0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 (2014.3.27.), 제2019-185호(2019.6.7.) 및 제2022-479호(2022.12.8.)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28호 (2017.12.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72호 (2019.6.12.), 제2020-10호 (2020.2.5.) 및 제2023-1호 (2023.1.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24호 (2019.3.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28호 (2023.4.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의 사본은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02-6202-30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5월 3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1. 종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지적 확정 측량 결과에 의함)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1 일대
- 면적 : 6,500.1㎡ (대지 3,377.2㎡, 정비기반시설 3,122.9㎡)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 명칭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근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역삼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최초) : 2019. 03. 13.

5.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일 : 2023. 01. 16.

6. 건축시설

구분	용도	규모	비고
시행면적	택지	3,377.2㎡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정비기반시설	3,122.9㎡	도로(소로3-24) : 195.4㎡ 공원 : 1,316.4㎡ / 녹지 : 412.4㎡ 주차장 : 1198.7㎡ 연결데크 : 111.8㎡ (상부보행자 도로, 면적 불포함)
	합계	6,500.1㎡	
건축면적		2,032,0136㎡	건폐율 : 60.17%
연면적	지상층	31,703,2138㎡	
	지하층	19,425,4529㎡	
	합계	51,128,6667㎡	용적율 : 937.60%
층 수		지하9층 ~ 지상26층	높이 : 89.95m
용 도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366대	

7. 이전고시 내역

가)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현황

구분	용도	면적(㎡)	확정지번	비고
합계		6,500.1		
택지	소계	3,377.2	인현동2가 240	대지 대지면적 중 일부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
	대지	3,377.2		
	입체적도시 계획시설 (도로)	23.85 (상부보행자도로, 면적 불포함)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122.9		서울특별시 중구청 (무상 귀속)
	도로 (소로3-24)	195.4	인현동2가 240-1	
	공원	416.0	인현동2가 240-2	
	녹지	370.8	인현동2가 240-3	
	주차장	1,198.7	예관동 143	
	공원	900.4	예관동 143-1	
	녹지	41.6	인현동1가 177-1	
	보행자전용도로 (연결데크)	111.8	(상부보행자도로, 면적 불포함)	

나)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

○ 공동주택 (아파트)

공급대상	규모별 (전용면적기준) 세대수							
	계	24A	24C	28A	29A	29C	40A	42A
계	321	66	11	84	84	24	40	12
토지등소유자 (임대주택)	40						40	
체비지	281	66	11	84	84	24		12

○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대상	규모별 (전용면적기준) 세대수							
	계	24B	24D	28B	29B	29D	40B	42B
계	293	66	11	77	77	22	29	11
체비지	293	66	11	77	77	22	2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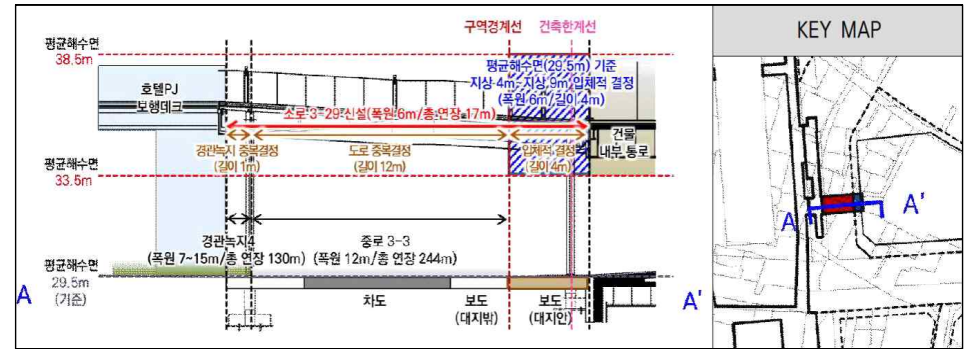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공급대상	면적 기준					
	호실수	층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	합계
계	31		2,749.6382	1,147.3321	1,876.0009	5,772.9712
토지등소유자	31	지하1, 지상1~2층	2,749.6382	1,147.3321	1,876.0009	5,772.9712

다) 새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 서울특별시 중구청으로 무상 귀속

○ 보행자 전용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소로3-29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데크 연결통로	인현동2가 240	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9호 (2022.12.8.)
			폭		
			높이	도시계획시설	
비도시계획시설	지상4m미만, 지상9m초과				
세부사항	○ 보행자 전용도로 - L=17m, B=6m ○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중복 결정 - 경관녹지4 (L=1m) - 중로3-3 (L=12m) ○ 호텔PJ 동측 보행데크 입체적 결정 - 인현동2가 240 (L=4m)				



라)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외 권리의 종류 및 건수

권리종류별		비고
건수	권리종류	
1	부기등기	주택법 제61조 제3항

마) 새로이 신설되는 소유권외 권리의 종류 및 명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권리의 종류	위치	범위	존속기간	지상권자
소로3-29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데크 연결통로	구분 지상권	인현동2가 240	지상4m ~ 지상9m (평균 해수면 33.5m~38.5m)	시설물 존치시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